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호	1589
-----------	------

2024년 2월 27일
교육 위원 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2월 5일, 김 경 의원 등 14명
2. 회부일자 : 2024년 2월 7일
3. 상정일자 :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4년 2월 27일 상정, 수정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 경 의원)

1. 제안이유

-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인해 다문화학생 등에 대한 교육지원의 근거가 신설되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다문화학생”의 정의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수정하여 명

시함.(안 제2조제2호)

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뿐 아니라 입학예정자,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2조제2호)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5일 김정 의원 등 14명에 의해 의안 번호 제1589호로 공동 발의되어 2024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다문화학생”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동 개정조례안은 ‘다문화학생’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가목)’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아동으로 규정하면서 ‘그 밖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다목)’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근 국회는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을 개정하여 다문화학생의 범주 및 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¹⁾하였는 바, 이는

국제결혼의 확대, 외국인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다문화학생의 정의 및 교육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였기 때문입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학생에 대한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나.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

1) 정의(안 제2조제2호나목)에 대한 의견

-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제2조제2호나목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다문화학생을 정의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4항2)에서는 다문화학생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3)에 따른 아동이나 학생으로 규정하고,

1)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다문화학생등”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
- ② ~ ⑤ (생략)

[본조신설 2023. 10. 24.], [시행일: 2024. 4. 25.] 제28조의2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④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한다)은 제17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다.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4)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른 국적을 취득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을 다문화 학생의 범위로 규정한 동 조례안 제2조제2호나목은 상기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안 제2조제2호나목은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표-1] 다문화학생에 대한 규정5)

현 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다 문 화 가 족	<u>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재한외국인)</u> + <u>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u>	
	귀화허가를 받아 <u>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u> + 출생시부터 <u>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u> 또는 귀화허가를 받아 <u>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u>	
		2.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2) 정의(안 제2조제2호다목)에 대한 의견

○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제2조제2호다목 “그 밖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삭제하는 것으로 발의하였습니다.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제403회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9쪽 표 인용

○ 이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은 다문화학생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근거로 정의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에서는⁶⁾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은 거주사실만 확인할 수 있으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금번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에서는 조문의 제명을 ‘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지원’으로 명명하며 다문화학생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아동 또는 학생이 국내에 거주하기만 하면 국내 체류자격여부를 묻지 않고 교육지원을 하도록(법 제28조의2제1항제2호)’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교육부도 ‘2023년 다문화교육 지원 기본계획’에서 다문화학생의 유형을 국제결혼가정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가정까지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동 조례 역시 다문화학생의 범위에 ‘그 밖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다문화학생의 범위에 포함(제2조제2호다목)하여 교육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처럼 다문화학생과 관련한 규정과 지원현황을 살펴볼 때 관계 법령과 조례, 그리고 정부 및 교육청 모두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순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아동 또는 학생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조례가 다양한 인종과 민족 및 여러 사회계층 출신의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경험과 기회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제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문화학생의 범위에서 “그 밖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제외하는 안 제2조제2호다목의 삭제는 관련 법과 조례 및 정부방침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안 제2조제2호나목은 삭제하고, 다목을 현행 유지하는 것과 안 제2조제2호의 ‘아동’, 제2호가목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문구를 삭제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으나 안 제2조제2호의 ‘아동’, 제2호가목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문구 삭제는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아 반영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관리담당관-1917, 2024.2.16.)
- 다만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동법 시행령상에 규정된 ‘다문화학생’을 넘어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아동 및 학생을 포함한 ‘다문화학생등’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또한 지원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행 조례 역시 ‘다문화학생등’으로 용어를 일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2] 교육부 2023년 다문화교육 지원 기본계획 다문화학생 유형

국제결혼 가정	국내 출생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성장한 경우 ■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은 없으나, 학습에 필요한 문장이나 어휘를 이해하는 데 곤란을 겪는 경우 존재 ■ 사춘기에 진입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에 불편함을 느끼며, 심리정서 지원 요구
	중도 입국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데려온 경우,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결혼이민자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입국한 경우 등 ■ 새로운 가족과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스트레스가 발생하며, 정체성 혼란이나 무기력 등을 경험하는 경우 존재 ■ 한국어능력이 부족하여 공교육 진입과 적응에 어려움 발생
외국인 가정	외국인 가정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한국계 중국인, 중앙아시아 고려인, 시리아 난민 등 포함) ■ 정주여건이 불안정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존재 <p>※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p>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안 제2조제2호나목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을 삭제하고, 삭제된 같은 호 다목을 나목으로 함.
- 조례 내용 중 “다문화학생”을 “다문화학생등”으로 일괄 정비함.

VII.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589
----------	------------

제안연월일 : 2024년 2월 27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동 조례안 제2조제2호나목에 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를 다문화학생의 범위로 포함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다문화학생에 부합하지 않음.
-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의 아동 또는 학생을 교육지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이를 포함한 교육지원 대상자를 ‘다문화학생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조례안을 수정함.

2. 주요내용

- 안 제2조제2호나목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을 삭제하고, 삭제된 같은 호 다목을 나목으로 재규정함.
- 조례 내용 중 “다문화학생” 문구를 “다문화학생등”으로 일괄 정비함.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다문화학생” 을 “다문화학생등” 으로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다문화학생” 이란” 을 “ “다문화학생등” 이란” 으로 한다.

제2조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그 밖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제3조제1항 중 “다문화학생” 을 “다문화학생등” 으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다문화학생” 을 각각 “다문화학생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다문화 학생” 을 “다문화학생등”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다문화학생” 을 “다문화학생등”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다문화학생” 을 “다문화학생등”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다문화학생” 을 “다문화학생등”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다문화학생” 을 “다문화학생등”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다문화학생” 을 “다문화학생등”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다문화학생” 을 “다문화학생등”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다문화학생” 을 각각 “다문화학생등”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진흥 및 <u>다문화학생</u>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의 질적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p>	<p>제1조(목적) ----- ----- ----- ----- ----- ----- ----- <u>다문화학생</u> ----- -----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u>다문화학생</u>”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사람의 자녀</u>로서 「<u>유아교육법</u>」과 「<u>초·중등교육법</u>」상의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하</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생략)</p> <p>2. “<u>다문화학생</u>”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사람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u> 또는</p>	<p>제2조(정의) ----- ----- ----- ----- ----- ----- -----</p> <p>1. (개정안과 같음)</p> <p>2. “<u>다문화학생등</u>” ----- ----- ----- ----- ----- -----</p>

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그 밖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제3조(다문화교육 기본계획)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2(사업)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보급 등 다문화 이해교

아동을 말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 외국인

다. <삭 제>

제3조(다문화교육 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사업) (현행과 같음)

----.

가. (개정안과 같음)

나. <삭 제>

나. 그 밖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제3조(다문화교육 기본계획) ①-----

-----다문화학생등-----

제3조의2(사업) -----
-----다문화학생등-----

- 1. (개정안과 같음)

육 사업

2.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 학생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제4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문화학생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다문화 특별학급) ① 교육감은 특별한 교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학생을 위하여

제4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제5조(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제6조(다문화 특별학급) ① (현행과 같음)

2. 다문화학생등-----

3. -----

-----다문화학생등-----

제4조(실태조사) ①-----

-----다문화학생등-----

제5조(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다문화학생등

제6조(다문화 특별학급) ① -----

다문화학생등-----

다문화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적응을 집중 지원하는 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이하 “한국어예비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다문화학생 밀집지역 교육여건 개선)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학교의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자치구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율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학교에 다문화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다문화교육지원센

제7조(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 ① (현행과 같음)

제9조(다문화학생 밀집지역 교육여건 개선) ① (현행과 같음)

제10조(자율학교 지정·운영) ① (현행과 같음)

제11조(다문화교육지원센

제7조(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 ①-----
다문화학생등-----

제9조(다문화학생등 밀집지역 교육여건 개선) ① ----- 다문화학생등

제10조(자율학교 지정·운영) ①-----
-----다문화학생등-----

제11조(다문화교육지원센

터)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상담
2. 다문화학생에 대한 한국어 교육
3.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그 밖에 다문화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터) ① -----다문화학생등-----

-----.

② -----
-----.

1. 다문화학생등-----

2. 다문화학생등-----

3. 다문화학생등-----

4.-----다문화학생등-----

--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다문화학생”을 “다문화학생등”으로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문화학생”이란”을 ““다문화학생등”이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람의 자녀로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상의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사람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아동”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제2조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을 나목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다문화학생”을 “다문화학생등”으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다문화학생”을 각각 “다문화학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다문화 학생”을 “다문화학생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다문화학생”을 “다문화학생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다문화학생” 을 “다문화학생등”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다문화학생” 을 “다문화학생등”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다문화학생” 을 “다문화학생등”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다문화학생” 을 “다문화학생등”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다문화학생” 을 “다문화학생등”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다문화학생” 을 각각 “다문화학생등”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진흥 및 <u>다문화학생</u>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의 질적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다문화학생등</u>-----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u>다문화학생</u>”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사람의 자녀로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상의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u>을 말한다</p> <p>가. 「<u>다문화가족지원법</u>」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p> <p>나. 「<u>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u>」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p> <p>다. 그 밖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다문화학생등</u>” ----- -----<u>사람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아동</u>-----.</p> <p>가. 「<u>다문화가족지원법</u>」 제2조제1호에 따른 <u>다문화가족의 구성원</u></p> <p><삭 제></p> <p>나. 그 밖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p>

제3조(다문화교육 기본계획)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2(사업)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보급 등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
2.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 학생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제4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문화학생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조(다문화교육 기본계획) ①-----

-----다문화학생등-----

-----.

제3조의2(사업) -----
-----다문화학생등-----

-----.

1. (현행과 같음)
2. 다문화학생등-----
3. -----
-----다문화학생등-----

제4조(실태조사) ①-----

-----다문화학생등-----
-----.

제5조(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다문화학생등-----

-----.

제6조(다문화 특별학급) ① 교육감은 특별한 교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 학생을 위하여 다문화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적응을 집중 지원하는 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이하 “한국어예비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다문화학생 밀집지역 교육여건 개선)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학교의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자치구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율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학교에 다문화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6조(다문화 특별학급) ① -----
-----다문화학생
등-----
-----.

제7조(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 ①-----
-----다문화학생등-----

-----.

제9조(다문화학생등 밀집지역 교육여건 개선) ① ----- 다문화학생등-----

-----.

제10조(자율학교 지정·운영) ①-----
-----다문화학생등-----

-----.

제11조(다문화교육지원센터) ① 교육감
은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 상담 등
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
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
다.

1.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상담
2. 다문화학생에 대한 한국어 교육
3.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서비
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그 밖에 다문화학생의 교육을 위하
여 필요한 사업

제11조(다문화교육지원센터) ① -----

-----다문화학생등-----

-----.

② -----

-----.

1. 다문화학생등-----

2. 다문화학생등-----

3. 다문화학생등-----

4.-----다문화학생등-----
